

서울사이버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會議錄

(2022학년도 제2차)

회의소집통보일자	2022. 12. 14.		
위원정수	10	재적위원	10

1. 일시 : 2022년 12월 22일(목요일) 오후 2시

2. 장소 : 서울사이버대학교 B동 104호

3. 출석위원 :

위원 권 금 주, 위원 김 중 엽, 위원 김 준 호,
위원 김 희 숙, 위원 박 현 석, 위원 오 석 선,
위원 이 재 응, 위원 정 응 용

(가나다순)

4. 결석위원 : 강은영, 정의석

5. 회의안건

- 1) 2023학년도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징수 건
- 2) 기타 안건

6. 회의진행

위원장은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안전심의 :

위원 장 : 제1호 안건과 관련하여 기획조정실 전략기획팀 남상규 처장이 참석하였다고 하고 설명을 요구하다.

남 상 규 처 장 : 고등교육법상 입학금 폐지관련 조항이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게 되어 본교도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게 되었다고 하고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입학비용 분을 산입한 등록금의 변동사항과 관련 절차에 대해 회의자료를 통하여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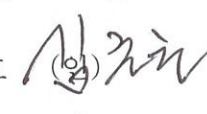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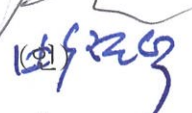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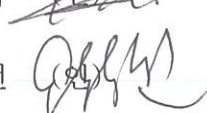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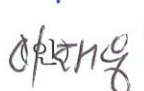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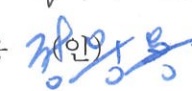
이재응	김희숙	김중엽	김준호
권금주	김희숙	김희숙	김희숙

- 위 원 장 : 제1호 안건인 2023학년도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징수와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다.
- 이 재 응 위 원 :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이 아니어서 신청하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묻다.
- 남 상 규 처 장 : 본 건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이므로 기존 국가장학금 신청기준이 아니라 모두 신청대상이 됨을 설명하다.
- 김 희 숙 위 원 : 학생에 대한 확실한 공지를 통하여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다.
- 위 원 장 : 등록금 환불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다.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신청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혜택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산입하여 징수하는 것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요구하다.
- 정 응 용 위 원 : 2023학년도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징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다.
- 김 희 숙 위 원 : 정응용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
- 위 원 장 : 정응용 위원의 동의와 김희숙 위원의 재청에 따라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이에 위원장은 2023학년도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징수건이 심의되었음을 알리다.
다른 위원들의 의견을 물으니 추가의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타 안건이 있는가를 묻다.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2학년도 제2차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종료를 선언하다.

7. 폐 회

위원장이 다른 기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 하니 오후 2시 30분이 되다.

2022년 12월 22일

위 원 장 : 권 금 주 			
위 원 : 김 준 호 		위 원 : 김 중 엽 	
위 원 : 김 희 숙 		위 원 : 박 현 석 	
위 원 : 오 석 선 		위 원 : 이 재 응 	
위 원 : 정 응 용 			

(가 나 다 순)

제1호 안. 2023학년도 입학금 폐지에 따른 등록금 징수 건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설립자·경영자는 해당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제29조에 따라 대학원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제29조의3에 따라 통합된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입학금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19. 12. 3.>

부 칙

제3조(입학금 징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이후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입학금 폐지 관련 법 시행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사이버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하고 이를 등록금에 산입하게 됨. 다만 신.편입생(외국인 제외)이 한국장학재단에 개별 신청하면 인상분(99,000원)을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지원받음
 - 지원방법 : (학생) 입학 시 등록금 납부, 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신청 → (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입학 여부 확인 후 해당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급 → (대학) 국가장학금 신청자에게 환불
 - ※ 대학은 장학재단으로부터 국가장학금 신청 건에 맞춰 장학금을 지급받음
 - ※ 학생이 국가장학금을 개별 신청하지 않으면 인상분 환불이 불가함
- 외국인의 경우 실입학비용 인상분의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국가장학금 신청 및 지원 불가
- '실입학비용 분'을 산입한 등록금의 변동 사항(15학점, 장학30%)은 아래 예시와 같음

[2022학년도]

(단위 : 원)

구분	등록금액 (A)	감면(장학수혜)금액 (B)	납부금액 (A-B)
입학금	99,000	99,000	0
수업료	1,170,000	351,000	819,000
기타납부금	0	0	0
총계	1,269,000	450,000	819,000

※ 2022학년도까지는 입학금을 징수하되 사전감면 처리

[2023학년도]

(단위 : 원)

구분	등록금액 (A)	감면(장학수혜)금액 (B)	납부금액 (A-B)
수업료	1,269,000	351,000	918,000
기타납부금	0	0	0
총계	1,269,000	351,000	918,000

이재용	오수민	신정호	장우용
현승주	김동민	김희우	박희3

※ 수업료에 포함된 실입학비용 인상분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에 한해 환불 처리

○ ‘실입학비용 분’을 등록금에 산입하는 대학(입학금 폐지대학)은 해당 산입분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산출함(교육부 공고 제2021-490호)

- 등록금 인상률 산출 공식

$$\frac{\text{폐지년도 평균등록금} - \text{폐지전년도 평균등록금} - (\text{'18년 평균입학금의 } 33\% \times \text{폐지년도 1학년 입학정원} / \text{폐지년도 편제정원})}{\text{폐지전년도 평균등록금}} \times 100$$

- 위 산출공식에 따른 2023학년도 본교 등록금 인상률은 -0.63%임

[붙임] 관련 공문

1.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5578(2022.12.20.) 입학금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 재안내
2.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5927(2021.12.22.) 2022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 공고 알림

제2호 안. 기타 안건

이재우	오승민	심준호	장영봉
현승주	김홍영	박리하	백하리